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성인원 : 20인 이내

나. 자격

-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구성방법 :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

라.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마. 임무

-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감사
-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사항에 대한 자문
-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 그 밖에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tico3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감사
2. 교육감이 요청하는 행정수행 과정의 참관
3. 반부패·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
4.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제시
5. 공무원 비위, 부조리 행위 제보
6. 기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

학교수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감사 참여) 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시로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제척·기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수)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 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성명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사항명			
감사결과 및 의견	감사 중점	○	
		-	
		-	
	감사 결과	○	
		-	
		-	
	감사자 조치 의견	○	
		-	
		-	
위 기재 사항은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오기 또는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 .

작성자 : 시민감사관 (인)

입회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단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제6조제1항 관련)

제 목	
제보 및 건의 내 용	
첨 부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